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김도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2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도운, 홍영진, 강혜순  
 박경흠, 김태욱, 문기호  
 안영호, 정재환, 문희성  
 이명녀

##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내 장애인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사무의 위탁, 구매 촉진,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관계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3조

## 5.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2025. 2. 13. ~ 2. 24.(11일간) / 의견없음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확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 및 판로 개척
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반복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불법 사용하여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기업
6. 장애인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형식적 대표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행하는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경제·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 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2. 미첨부 사유

- 중구 관내 장애인기업이 적어 ‘정보 및 자료 제공’, ‘관로개척’, ‘제품 홍보’ 등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더라도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상 장애인기업 수: 34개사

### 3.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은민(052-290-4462)